



천주교 서울대교구
구로3동 성당
주보성인 : 프란치스코 살레시오

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.guro3cc.com
☎ 사무실 857-8541 팩스 857-8549

미 사 시 간	주 일	토요일 주일 : 19:00	
		06:30 (새벽)	10:30 (교중)
		12:00 (중·고등부)	15:00 (유·초등부)
	평일	06:30 (새벽), 19:00 (저녁), 목요일 10:00	
예비자	교리	일요일 오전 09시 / 화요일 저녁 8시	
유아	세례	토요일 오전 11시 (사무실 문의)	
연령회	회장	김인기 베드로 010-5311-7604/869-5965	

모임

단체명	일시	장소
제대한화회	6월 3일(수) 11:00	6교실
자녀를 위한 기도	6월 5일(금) 19:40	1교실
성모성심회	6월 6일(토) 17:30	강당

알림

- 5월 29일(금) 저녁미사후 성시간 및 성체강복이 있습니다.
- 5월 31일(일)은 청소년 주일로서 2차헌금이 있습니다.
- 6월 1일(월) 10:30 살레시오 성소후원회 미사가 있습니다.

다음 주일(5/31) 청소년 담당 : 12구역

예비자 교리반 신청 안내

- 첫모임 : 5월 31일(일) 9시
- 장소 : 제 2교실
- 본당 사무실에서 신청 받습니다.

※ 세례식은 2026년 성탄 대축일 예정입니다.

16지구 청년연합회 2분기 연합미사

- 일정 : 2026년 6월 7일(일)
- 내용 : 17:30 - WYD개최를 위한 묵주기도 5단
18:00 - 연합미사
- 장소 : 구로3동 성당 대성전
- 준비물 : 묵주, 봉헌금

시니어 아카데미 노래교실(노래강사)

- 일시 : 화요일 오후 1시
- 장소 : 문화관 강당
- 모든 신자 참여 가능합니다.

문화홍보분과 동아리원 모집중

- 오카리나반 : 화요일 오후 6시
- 통기타 초급반 : 금요일 오후 7시 30분
- 통기타 중급반 모집중입니다.
- 신청 및 문의 : 최선영 마리아 010-7768-4888

2026년 청소년과 함께하는 성모의 밤

- 일시 : 5월 25일 (월) 17시00분 ~ 19시 대성전
- 대상 : 전 신자
- ※ 성전 입구 전시회 관람, 음료, 간식나눔이 있습니다.

도움이신 마리아 신심회(ADMA) 회원모집

- ADMA란 돈 보스코의 정신으로 도움이신 마리아 신심을 전파하는 단체입니다. 도움이신 마리아를 어머니요 모범으로 모시면서, 돈 보스코의 카리스마에 따라 성화와 사도직의 여정을 걸어가고자 하는 자매들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.
- 모집기간 : 2026년 5월 25일 ~ 6월 12일
- 모임시작일 : 6월 14일 교중미사 후 첫모임(월1회)
- 신청방법 : 본당 사무실 접수
- 지도신부 : 백승준 시몬 주임신부

우리들의 정성(5월 13일 ~ 5월 19일)

교무금		5,070,000원
주일헌금	현금	 5,147,600원
	신자애퍼	 40,000원
2차헌금		1,787,500원
정육임 5만원 김OO 10만원 김명순10만원		
감사헌금	이석구 5만원 성지순례단 166천원 15천엔 9구역 5만원	

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

월일	해설	복사	독서
5/24	임종남	신종구 이남식	안상록 이화정
5/31	신영옥	김영균 김재호	김덕영 손정주

성체 분배자 명단

월일	토요주일	06:30	10:30
5/24	김영균	조홍환	도현만 하재민
5/31	김용진	최웅조	박용환 김영균

성가번호 ♪ 입당 : 142 ♪ 예물준비 : 342, 217 ♪ 영성체 : 180, 165 ♪ 파견 : 147

화답송



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: 우리은행 129-05-001894 예금주 :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
(※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.)

제 3 편 사 목

제 2 장 본당 사목구

제 1 절 본당 사목구

제 2 관 사목자의 임무

제 165 조 (교회 운영 활동비)

신자들은 주교회이나 교구의 규정에 따라 교무금, 주일헌금, 기타 헌금과 모금 등으로 교회 운영 활동비를 부담하여야 한다(교회법 제531.1262조; 사목회의 교회운영 의안, 16.46.47.65.66항 참조).

제 166 조 (공익사업)

사목자는 신자들뿐 아니라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도 파견되었음을 명심하여 지역 전체를 위한 공익사업에도 힘써야 한다(교회법 제528조 1항; 사제직무교령, 6항; 사목회의 성직자 의안, 37항 5; 사목회의 지역사목 의안, 52항 참조).

제 3 관 본당 신자단체

제 167 조 (신자단체)

1항 평신도는 그리스도의 사제직, 예언자직, 왕직에 참여하여 자기 처지에 따라, 복음을 선포하고 세상을 복음화하도록 불리었으므로,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사도직을 수행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(교회법 제225조; 교회헌장, 31항; 평신도교령, 2항; 사목회의 교회운영 의안, 53-61항 참조).

2항 신자는 각자의 연령, 성별, 신분, 조건에 따라 교회가 권장하는 신자단체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(교회법 제216조.제298조 2항; 사목회의 평신도 의안, 80-89항 참조).

3항 신자는 여러 단체의 중요 직책을 될 수 있는 대로 중복해서 맡지 말아야 한다.

4항 유사한 성격을 가진 단체들이 난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(교회법 제328조 참조).

제 168 조 (주임사제의 인준)

1항 신자들의 모임이라도 주임사제의 인준을 받지 아니하면 사목구의 공적 신자단체로 인정되지 아니한다. 따라서 사목구의 각신자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은 사목구 주임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(교회법 제216.314조.제322조 2항.제529조 2항; 사목회의 성직자 의안, 37항 1 참조).

2항 사목구의 각 신자 단체의 장은 그 단체에서 선출되더라도 주임사제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(교회법 제324조 2항; 사목회의 교회운영 의안, 60.61항 참조).

3항 사목구의 각 신자 단체의 활동과 재정은 주임사제의 지도와 감사를 받아야 한다(교회법 제305.315.323조 참조).

<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 참조>